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<http://www.kma.org>] / 전화(02)6350-6572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욱 [6581]/ 팀원 이승아 [6572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3698호

시행일자 2026. 6. 2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
의견조회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-493호(2026. 6. 23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이를 알려드리오니,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협회 보험정책급여팀(kma6350@naver.com 메일송신 요망)으로 2026. 7. 8.(수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개정내용]

○ 과징금 부과대상을 폐업 기관 뿐만 아니라 휴업·미운영기관 등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2호 다목)

#붙임 : 관련 공고문,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사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